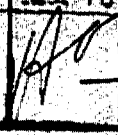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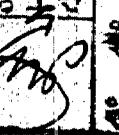


제 1215 호
1985. 11. 11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보관
편집인 : 공보관 이광우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제	보도대장	공보관	공보관	공보관
				공보관

시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 768 호 : 무교제 7 지구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	3
제 769 호 : 도시계획사업 (공원조성) 실시계획변경인가	4
제 770 호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	8
제 771 호 : 도시계획시설 (시장) 지적승인	9
제 772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, 유치원) 시행허가	9
제 773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	10
제 774 호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변경허가	10
제 775 호 : 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 변경결정	11
제 776 호 : 사료성분등록신청	12

< 이 년 제 속 >

공											
보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1876

◎ 공 고

제 665 호 : 도로상공작물 (육교) 설치허가	13
제 666 호 : 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공허가를위한공람공고	13
제 667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공람공고	14
제 669 호 : 마포로제 2 구역제 7 지구재개발사업완료공고	15
제 672 호 : 투기과열지구지정공고	16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768 호

무교제 7 지구재개발사업관리
처분계획인가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0 호 ('83. 5.11)로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된 무교제 7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40 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기 이를 동법 제 1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11.11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의 명칭 : 무교제 7 지구 재개발사업

나. 시행구역 : 중구무교동 1-2 의 9 필지
다. 시행면적 : 1,226.80 ㎡

라. 시행자의 주소, 성명

1) 주소 : 서울특별시중구무교동 1-2 의 9 필지

2) 성명 : ㈜신라개발산업
대표이사 이기동

마. 사업시행기간

'83.5.11 - '86.4.30

바.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
대지 및 건축시설

1) 대 지 : 1,092.70 ㎡

2) 건축시설 : 11,391.25 ㎡

가) 층수 : 지상 15 층, 지하 4 층

사. 분양설계

1) 토 지

시행구역내 토지 10 필지

1,226.80 ㎡중 계획공공용지

134.10 ㎡를 제외한 1,092.70 ㎡

를 확정 측량을 거쳐 1 필지로
지적 정리하여 건축물의 분양면
적에 비례하게 공유지분으로 분
양한다.

2) 건 물

가) 사업시행으로 신축된 건축물

11,391.25 ㎡를 분양신청자 합

의에 의하여 (합의내용 별도첨
부) 배분하되, ㈜광남산업은 금

액으로 환산처리토록 하고, 이
길상에게는 지하 1 층 468.7 ㎡,

문순자에게는 지하 1 층 136.55 ㎡

의 지상 6 층 360.48 ㎡ 안준교

에게는 지상 4 층 175.90 ㎡ 와

5 층 360.48 ㎡를 자기 배분하

고 나머지는 시행자의 몫으로

한다.

나) 분양신청자에게는 토지 및

건축물 상기 지분을 각자에게

배분하고 청산을 하지 않음.

다) 사업시행전의 건축물에 대해

서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

분양하지 아니한다.

라) 분양면적 계산 : 별표참조

- 전용면적 : 실면적
- 공유면적 : 총 연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 (총공유+층외공유)
- 단수처리

토지, 건물 공히 토지, 건물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.

아. 분양대상자의 주소, 성명 : 별첨(생략)

자. 분양대상자별로 분양 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물 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 : 별첨 1

차.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 (생략)

카.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이에 대한 청산방법 : 별첨 2

타. 법 제 43 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격 및 처분방법 : 별첨 (생략)

파.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: 별첨 (생략)

하. 참여조합원이 취득하게 될 대지와 건축시설의 명세 및 참여조합원의 주소, 성명 : 해당사항 없음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69 호

도시계획사업 (공원조성) 실시 계획변경인가

1. 강남구 양재동 산 45-3 번지 일대 도시계획사업 (공원조성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6 조와 도시공원법 제 5 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1.11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강남구 양재동 산 45-3
의 102 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
사업 (양재근린공원 조성사업)

다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
라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
사업착수일 : '85.9.1

준공예정일 : '86.10.31

마. 사업의 규모 : 별첨 (생략)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별첨 (지적정정)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별첨 (변경분)

토지의 소재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						
연번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유권 이외의 권리	비 고
1	서초동	산 21-2	임 야	26		
2	"	산 22	"	4,562		
3	"	산 23-16	"	27,927		
4	"	산 28	"	16,165		
5	"	산 29-2	"	46		
6	"	산 29-3	"	10,829		
7	"	산 30-1	"	9,984		
8	"	산 30-7	"	648		
9	"	산 30-12	"	792		
10	"	산 30-8	"	692		
11	"	산 30-15	"	635		
12	"	산 30-16	"	199		
13	"	산 30-17	"	303		
14	"	산 30-18	"	2,588		
15	"	산 30-19	"	35		
16	"	산 30-22	"	572		
17	"	257-2	전	281		
18	"	258-3	"	529		
19	"	258-3	"	264		
20	"	258-4	"	859		
21	"	367-3	"	2,254		
22	양재동	산 17-5	임 야	1,190		
23	"	산 17-6	"	99		
24	"	산 17-19	"	10,757		
25	"	산 17-20	"	4,182		
26	"	산 17-21	"	15,220		
27	"	산 17-22	"	291		
28	"	산 17-48	"	796		
29	"	산 17-49	"	77		

16-6 제 1215 호 시

보 1985.11.11

연 번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	비 고
30	양재동	산 20-2	임 야	9,967	가 등 기	
31	"	산 20-3	"	1,817		
32	"	산 20-4	"	3,981		
33	"	산 20-5	"	17		
34	"	45-2	대 지	637		
35	"	45-4	"	278		
36	"	45-5	"	651		
37	"	45-6	"	631		
38	"	45-7	"	11		
39	"	산 35-1	임 야	248		
40	"	산 36-1	"	1,290		
41	"	산 36-2	"	3,168		
42	"	산 36-3	"	793		
43	"	산 36-4	"	6,399		
44	"	산 37-1	"	1,637		
45	"	산 37-2	"	3,372		
46	"	산 37-3	"	1,636		
47	"	산 38	"	6,627		
48	"	산 38-1	"	2,497		
49	"	산 39	"	1,190		
50	"	산 40	"	8,141		
51	"	산 40-1	"	6,239		
52	"	산 41	"	11,984		
53	"	산 41-1	"	1,702		
54	"	산 42-1	"	661		
55	"	산 42-2	"	7,135		
56	"	산 42-3	"	4,550		
57	"	산 42-5	"	8,264		
58	"	산 42-6	"	7,207		

연번	소재지	지 번	지 목	지 적	소유권이외의권리	비 고
59	양재동	산 42-7	임 야	3,654		
60	"	산 42-8	"	700		
61	"	산 43-1	"	7,849		
62	"	산 43-3	"	1,116		
63	"	산 44-1	"	6,223		
64	"	산 44-2	"	5,438		
65	"	산 44-3	"	1,413		
66	"	산 44-4	"	810		
67	"	산 45-1	"	4,790		
68	"	산 45-2	"	6,612		
69	"	산 45-3	"	2,617		
70	"	산 45-4	"	1,822		
71	"	산 45-5	"	523		
72	"	산 46-1	"	1,716		
73	"	산 46-2	"	21,431		
74	"	산 46-3	"	3,332		
75	"	산 47-1	"	2,727		
76	"	산 47-2	"	248		
77	"	산 48-1	"	8		
78	"	산 48-2	"	198		
79	"	산 48-5	"	8,126		
80	"	산 48-7	"	5,691		
81	"	산 49-1	"	397		
82	"	산 49-3	"	9,223		
83	"	산 49-4	"	694		
84	"	산 49-5	"	694		
85	"	산 49-6	"	562		
86	"	산 49-8	"	195		
87	"	85-2	전	1,226		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권이외의권리	비고
88	양재동	산 50-1	임야	10,605		
89	"	산 51-1	"	5,369		
90	"	산 51-2	"	2,238		
91	"	산 51-3	"	198		
92	"	산 53-1	"	5,279		
93	"	산 53-2	"	5,382		
94	"	산 53-3	"	4,783		
95	"	산 53-4	"	6,076		
96	"	산 54-1	"	9,124		
97	"	산 54-2	"	198		
98	"	산 54-3	"	4,562		
99	"	산 55	"	13,587		
100	"	산 57-1	"	4,238		
101	"	산 57-5	"	165		
102	"	산 57-6	"	1,686		
103	"	산 57-7	"	661		

재산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성명

연 번	재 산 의 표 시		소 유 자 주 소 성 명		소유권이외 의권리명세
	동	지 번	관 계 인 주 소 성 명		
42	양 재	산 36-3	둔촌동 469-1	이명엽	가 등 기
			부산시중구부평동 4-40	한형숙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70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

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11.11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명 :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

2. 사업주체 :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
신안건설산업㈜

대표 :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 370-
103 우경선

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치 : 서울특별시강서구신월동
591-1,2

나. 면적

변경전	23,775.4 m ²
변경후	23,650 m ²

다. 규모 : 아파트 10층 5동 440세대

4. 사업시행기간
'85.3 - '86.3.31

가. 도시계획시설(시장)지적승인 조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71 호

도시계획시설(시장)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696 호 (85.10.15) 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시장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1.12

서울특별시장
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 (m)
신설	시장	대방동 71-1 번지 일대	19,724.6

나. 도면 별첨(생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72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, 유치원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624 호 (85.9.21) 및 동고시 제 680 호 (85.10.8) 로 도시계획사업(학교, 유치원) 결정 및 지적승인된 관악구 봉천동 산67-32,34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
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1.13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-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

동산 67-32,34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도시계획

사업 (학교, 유치원) 시행

1) 성덕고등기술학교

2) 성북유치원

다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

1) 사회복지법인 성심복지재단

이사장 박행남

(관악구신림동 90-92)

2) 학교법인 성북학원 이사장

조종호 (동작구노량진동 232-192)

라. 사업시행규모

1) 대지면적

성덕고등기술학교 (1,915 m^2)

성북유치원 (987 m^2)

2) 건축면적 - 학교 (576 m^2) 유치원

(233.64 m^2) 수위실 (3.24 m^2)

3) 건축연면적 - 학교 (2,818.8 m^2)

유치원 (924.84 m^2) 수위실 (3.24 m^2)

○서울특별시 고시제 773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) 변경결정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5 호 (78.4.

3) 로 결정되고 동고시 제 716 호

(85.10.25) 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

시설 (학교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

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 1항 1조

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

이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

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

보인다.

1985.11.13

서울특별시 장

○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 (m^2)	비고
변경	학 교	강남구 역곡동 72번지의 7필지	9,441	

○서울특별시 고시제 774 호

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변경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2 호 (83.9,

7) 로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시행 허

가되고, 동고시 제 790 호 (84.12.27)

로 변경허가된 강남구 역삼동 722번

지 도시계획사업 (시장) 에 대하여

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

제 25 조 규정과 동령 제 6 조 1 항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허가하였기 이 를 고시한다.		관계인에게 보인다. 1985.11.13 서울특별시 관 가. 사업시행지 -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22번지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도시계획사업 (시장) 변경시행			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다. 사업의 규모		단위 :㎡			
구 분		변경 전	변경 후	증 감	비 고
대 지 면 적		9,906.9	9,906.9		
건 축 면 적		1,680	1,512	△ 168	
연 면 적		6,782	6,659.4	△ 122.6	
용 도	시 장	3,422	3,456	34	지하 1 층 ~ 지상 1 층
	대 중 탕 음식점 (시장)	3,360	3,024 (756)	△ 336	지상 2 층 ~ 지상 3 층
	기 계 실		179.4	179.4	옥 탭
라. 사업시행자 - 당초 : 서울시강남구삼성동 654 영동중앙물산(주) 대표 김한보 변경 : 서울시강남구역삼동 722 영동중앙물산(주) 대표 김대환		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- 별첨 (생략)			
마. 사업예정기간 - 착수년월일 - 83.8 준공예정일 - 85.12.30 변경준공예정일 - 86.3.30		◎서울특별시고시 제 775 호 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 변경결정			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 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 - 별첨 (생략)		1. 서울시 도시계획구역내인 경기도 고양군관내 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 정류장 : 시내버스)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			

1 항 1 호나동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4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	시설계획과와 고양군청 도시과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국	1985.11.13 서울특별시장
가. 도시계획시설 (여객자동차정류장) 변경결정 조서	

구분	시 설 명	위 치	규 모	비 고
기점	여객자동차정류장	경기도고양군신도읍덕은리 269-2 외 4 필지	14,578 m ²	신촌교통
변경	"	경기도고양군신도읍덕은리 269-2 외 2 필지	7,272 m ²	감) 7,306m ²

나. 결정도면 :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 고시제 776호

사료 성분 등록 신청

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에 의

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등록 사항을 고시한다.

1985.11.13

서울특별시장

등록 번호	공장 명	소재지	대표자	사료의 종류또는용도	성 분 량 (%)						비 고
					조 단백질	조 지방	조 섬유	조 회분	칼슘	인	
4-36	홍성사 료공업	성수2 가323	정배원	주문자난 돼지사료	20.5 이상	2.5 이상	5.5 이하	8.0 이하	0.6 이상	0.4 이상	
4-37	주식 회사			주문비육 돈후기	13.5 "	2.5 "	6.0 "	9.0 "	0.5 "	0.4 "	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65 호

도로상공작물(육교) 설치허가

1. 서울특별시 도봉구 월계동 447 의

가. 사업개요

1 학교법인 광운학원 조무성으로
부터 도로상 공작물(육교) 설치허
가 신청에 의거 허가하였기 도로
법 제 40 조 및 동법시행령 24 조
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5.11.11

서울특별시장

사업시행지	사업종류 및 명칭	규 모	착 공 예 정 일	준 공 예 정 일	비 고
도봉구월계동 467-1 외 3 필지	도로상 공작물 (육교) 설치 (광운공대앞 보 도육교 시설 공사)	폭 B=4.6m 연장 L= 40.48m	85.11	86.5.31	

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, 성명: 도봉구 월계동 447-1 학교법인 광운학원
대표 조 무 성

다. 위 치 : 도봉구월계동 462-1 외 3 필지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66 호

도시계획사업(주차장) 시행
허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631 호(85.9.
23)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
계획시설(주차장)에 대하여 도시
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

제 25 조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
조에 의거 공람코자 이를 공고한
다.

2.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
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
이공고로 갈음하며 관계도서는 서
울특별시 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
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에게 보낸다.

○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중구청 (도시 정비과) ○ 공람기간 : '85.11.12-11.25 (14일간) 1985.11.11 서 울 특 별 시 장 공 랑 개 요 1. 사업장의 위치 : 서울시중구태평로 4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			1가 60-18 외 2 필지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 사업 (주차장) 시행 3. 사업의 규모 ○ 대지면적 - 977.5 m ² ○ 주차면면적 - 1,624,025 m ² ○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에 한함.	
소 재 지	지 목	면 적	토 지 소 유 자	소유권이외의 권리
중구태평로 1가 60-18	대	866.1 m ²	(주)코리아나호텔	없 음
" 60-9	"	15.5	"	"
" 61-1	"	95.9	재무부 (국세청)	"
계		977.5		
5. 사업시행자 : 주소 - 중구태평로 1가 61-1 (주)코리아나호텔 대표이사 방 용 훈 (520505-10068113) 6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인가일 로 부터 '86.12.31 7. 토지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국 (재무부) 8. 도면생략 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67 호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공람공고 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360 호 ('64.7.			3) 로 환지 확정된 도시계획시설 (학교)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(학교 : 한성중학교) 실시계획을 수 립하고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: 공고한다. 2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 과에 비치하고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 1985.11.11 서 울 특 별 시 장	

다 음

- 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서대문구
북아현동 161 번지일대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
사업 (학교) 한성중학교 시설확충
- 다.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
- 면 적 - 28,536.5 m^2
 - 건축면적 - 290.41 m^2
 - 건물용도 - 화장실 및 창고 (지상
1 층)
- 라.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: 서울
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 170-1
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장 김 병 호
- 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- 1) 착공년월일 : '85.11
 - 2) 준공예정일 : '86. 1.25
-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
물 소유자 주소, 성명 : 학교법인
한성학원 소유
- 사. 계획평면도 : 별첨 (도면생략)
- 아. 공람공고기간 : 공고일로 부터
14 일간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69 호

마 포 로 제 2 구 역 제 7 지 구
재 개 발 사 업 완 료 공 고

서울특별시 고시 제 508 호 (83.9.
28) 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되고, 동
고시 제 692 호 ('84.11.27) 및 제
638 호 (85.9.26) 로 재개발사업 시행

변경인가된 마포로제 2 구역 제 7 지구
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재개발
법 제 4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
다음과 같이 완료 공고한다.

1985.11.11

서 울 특 별 시 장

다 음

1. 사업시행지 : 마포구공덕동 254-5
번지의 24 필지
2. 사업명칭 : 마포로제 2 구역 제 7 지
구 재개발사업
3. 사업시행인가근거 : 서울특별시고시
제 508 호 ('83.9.28)
4. 시행자 주소, 성명

 - 소재지 : 마포구도화동 532 번지
 - 성 명 : 신원종합개발(주)

대표이사 박 성 철

5. 완료면적

가. 토 지

 - 대지면적 : 3,379 m^2
 - 공공용지면적 : 668 "
 - 제 : 4,047 "

나. 건 물

 - 건축면적 : 1,316.07 m^2
 - 연 면 적 : 36,853.94 m^2
 - 층 수 : 지상 20 층, 지하 5 층
 - 용 도 :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72 호

투 기 과 열 지 구 지 정 공 고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3 조의
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
같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동조
제 2 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
다.

1985.11.13

서울특별시강

다 음

1. 지정구역 : 서울특별시 성동구옥수
동 주택개량 재개발옥수 제 4 구역
2. 면적 : 74,566 평방미터
3. 주택명 (아파트명) : 성동구옥수
극동아파트
4. 규모 : 아파트 15 층 8 동 900 세대
(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
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제외)
5. 사업주체 : 주택개량 옥수제 4 구역
재개발조합